

의안번호	제1025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5월 30일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

(박용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25
----------	------

발의연월일 : 2025년 5월 30일

발의자 : 박용규, 이태훈, 노금식,
김호경, 변종오, 임영은,
황영호

1. 제안이유

미래 지속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충청북도 산림자원의 효율적 경영과 지역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다원적 기능 증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산림문화·휴양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산림치유 활성화 및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산림문화·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산림문화 및 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산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 진흥을 위한 시책 시행으로, 지역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의 수립·시행 등)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문화·휴양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문화·휴양자원 현황
3. 산림문화·휴양자원 관리 및 활용 방안
4. 산림문화·휴양 시설 안전관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 관련 조사 및 연구
2.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 및 정비
3. 산림문화·휴양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4. 산림문화·휴양 관련 민·관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운영
5.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산림치유 활성화) 도지사는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전문인력 활용)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의2. “산림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8.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의2.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9.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0.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문화·휴양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문화·휴양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림문화·휴양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이용·관리 및 확충 등에 관한 사항
5.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 및 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문화·휴양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에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적·지역적·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 유

-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이후 관련 사업 등의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규모에 대한 기술적인 예측이 어려움
- 이에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